

건양대학교 가족회사 운영규정

개정 2012. 6. 1
2018. 2. 9
2019. 2. 1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 제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가족회사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2.9.)

1. "가족회사"라 함은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과 산업체간 산학공동기술개발, 기술·경영지도, 기술이전, 학생의 현장실습, 취업예약기업 및 장비·시설의 공동 활용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과 체결한 산업체 등을 말한다.(개정 2018.2.9.)(개정 2019.2.1.)
2. "산업체 등"이라 함은 기업, 연구소, 관공서 등 산학협력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.

제 3조 (업무) 협약체결 및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 산학교육실로 하며,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2.9.)

1. 가족회사의 가입 접수, 승인, 탈퇴 및 정보관리
2.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에 따른 기술지도·이전에 관한 사항
3. 인력·시설·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
4.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활동에 관한 사항
5. 산업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생의 산업체 현장실습, 취업인턴 등에 관한 사항
7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(개정 2018.2.9.)
8. 산학협력 세미나, 특강,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
9. 산학협력 가족회사 지도교수에 관한 사항
10. 산학협력 장학금 및 후원금 연계에 관한 사항
11. 기타 산학협력관련 제반 업무

제 4조 (가입 및 협약체결) ① 가족회사의 가입을 원하는 산업체(지도교수)는 가입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후,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가입을 완료한다. 단, 대학에서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서 사본을 가족회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9.2.1.)

③ 산학협력단은 협약서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날인함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다.

제 5조 (탈퇴 등) ①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·폐업으로 확인될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단장의 승인을 얻어 탈퇴 처리한다.

② 가족회사가 명예를 실추하여 더 이상 산학협력단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단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할 수 있다.

제 6조 (협약서 발급) ① 가입이 완료된 가족회사에 대하여는 가족회사 협약서(별지 제2호 서식)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 원본 1부씩 보관 한다.

② 가족회사 협약서를 분실 이유로 가족회사가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담당부서는 재발급을 할 수 있다.(개정 2018.2.9.)

제 7조 (지원) 산학협력단 및 가족회사 지도교수는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기술혁신지원 및 경영 자문, 공동연구
2. 공용장비, 실험-실습 기자재 이용
3.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교류 기회 제공
4. 교육 및 분과별 기술교류회 활동

제 8조 (제반경비) 가족회사 협약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산학협력단과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9조 (협약서) ①협약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되,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협약내용은 양기관의 정보교환, 인적교류, 물적교류, 기타 장학지원, 인턴십, 현장실습 등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되,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③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하며,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 10조 (운영위원회) ① 가족회사의 효과적인 관리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

②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직원 중에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가족회사 가입 및 탈퇴에 관한사항
2.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사항
3. 가족회사 등급관리 및 평가에 관한사항
4. 기타 가족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(신설 2018.2.9.)

제11조(평가·등급) ① 가족회사와 산학협력단간 산학협력프로그램의 운영계획과 실적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평가결과에 따라 멤버십 가족회사와 파트너십 가족회사로 구분하여 관리하되, 지원을 차등할 수 있다. (신설 2018.2.9.)

제12조(정보보호)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기타) 기타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 및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2년 6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로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.

가족회사 가입 신청서

회 사 명			대 표 자 명		
사 업 자 등록번호			유 형		
핸 드 폰			일반전화		
팩스번호			홈페이지		
주 소					
업 종			종 목		
상 근 직 원 수	명	주요생산 품 목			
자 본 금			매 출 액		
가입기업 실무책임자	성 명			핸드폰	
	일 반 전 화			E-Mail	
지도교수	학부(과)			성 명	
본교졸업생 취업현황					
산학협력 내 용					

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「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」의 가족회사 프로그램에
참여하고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

신청인(기업체 대표)

(서명)

건양대학교 LINC사업단장/산학협력단장 귀하

☞ 사업자 등록증(사본) 1부 첨부

(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취업드림팀 ☎041-730-5616, FAX : 041-730-5247, Kydream@konyang.ac.kr)

가족회사 협약서



건양대학교-0000(주)

산·학 교류 협약서

로 고

건양대학교와 0000(주)는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본 협약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사업의 내용) 이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한다.

1. 학생의 현장실습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
2. IT 산업정보 및 학술정보의 상호교환
3.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
4.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기부
5. 공동 관심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
6. 산학협력을 통한 양 기관의 사업 참여 협조 및 인적교류 확대

제3조 (신의성실의 원칙) 본 협약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,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대표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 한다.

제4조 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20 년 월 일

단 장 0 0 0
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

(직 위) 0 0 0
 (협약 가족회사)

가족회사 현판

 건양대학교 LINC 사업단 



0000(주) · 건양대학교